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38호 2023. 9. 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69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3-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3-73호 신동읍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03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안.....6
- 정선군 공고 제2023-1045호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6
- 정선군 공고 제2023-1067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9

- 정선군 공고 제2023-1067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9
- 정선군 공고 제2023-1070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69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노후된 사북역사 신축(철도부지 확장)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 하고자 교통시설(철도) 및 공간시설(광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8-13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신동읍 천포리 399-5철 일원	고한읍 고한리 산213-9임 일원	① 고한역 (A=31,663㎡) ② 사북역 (A=45,151㎡) ③ 민동산역 (A=41,995㎡) ④ 자미원역 (A=7,740㎡) ⑤ 예미역 (A=30,800㎡)	38,602	382,153	강고 제2010-228호 (10.07.23)	태백선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신동읍 천포리 399-5철 일원	고한읍 고한리 산213-9임 일원	① 고한역 (A=31,663㎡) ② 사북역 (A=46,678㎡) ③ 민동산역 (A=41,995㎡) ④ 자미원역 (A=7,740㎡) ⑤ 예미역 (A=30,800㎡)	38,602	383,680	강고 제2010-228호 (10.07.23)	태백선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태백선)	시설 확장 : 382,153㎡ → 383,680㎡ (증 1,527㎡) ※ 위치 및 연장 변경없음	태백선 사북역사 신축을 위한 철도 시설부지 확장

(2) 공간시설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사북 역전 광장	교통 광장	사북읍 사북리 378-3번지	3,098	감 1,527	1,571	강고135호 (85.12.14)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	사북 역전광장	시설 축소 : 3,098㎡ → 1,571㎡ (감 1,527㎡)	교통광장(역전광장) 일부를 축소, 태백선 사북 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역사의 체계 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정선군 고시 제2023-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연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군계획 시설	소로 1-16호선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6-5번지 일원	-	과도한 도로구역 일부 변경 (편입면적 축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과도한 도로구역 일부 변경(축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구분	비고
	계		1필지				
1	정선읍	봉양리	376-5	도로	(주)에스앤제이	도로구역 해제	감 4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 정선군 건설과(☎ 033-560-2485)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정선군 고시 제2023-73호

신동읍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대하여 읍·면 소재지의 유희시설을 소규모 서비스 공급전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신동읍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동읍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 사업

2. 사업의 목적

- 신동읍 중심지에 위치한 유희시설물을 활용하여 지역과 주민 모두가 수혜받는 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시설물 확충을 통한 행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실현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동네 활력소를 조성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44

○ 사업내용

- 신나는 모두의 다락 : 국토건설단 D동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전시콘텐츠 공간 조성
- 신나는 동네주방 : 국토건설단 E동을 리모델링하여 프로그램 및 체험공간 조성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생활SOC 서비스 강화
- 지역역량강화 : 지역리더 교육 및 지도사 양성 등

4.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150)

5.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3.12.31.까지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신동읍장)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동읍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신동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3-560-2631)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03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제정(1985.4.8.) 이후 최근 20년간 적용사례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별첨] :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 제도개선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 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8조(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별첨】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 제도개선

2011. 1.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I . 추진배경 및 경위	1
II . 현 황	2
III . 문제점 및 원인분석	4
①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4
②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편법 운영	6
③ 지자체의 자의적 운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제기	9
IV . 개선방안	10
V . 조치사항	12

I.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 요소를 제거하도록 강조
 - 그러나, 공직자 특별채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각급 기관에서 잇달아 발생
- ※ 인천시교육청(서울, 9.11), 고용노동부(매경, 10.21),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연합, 11.9), 인천교육공무원(오마이, 11.25) 등
-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한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 운영하거나 악용하여 부정 특채
 - 일부 독립대학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해당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직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제기

- 충남도 및 관내 일부 시·군은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직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역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10.11.24)
- 전 예천군수는 12년간 재직하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지역유지들의 자녀 등을 특별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10.12.2)

-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 운영,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장학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 법령의 제도개선이 필요

□ 추진경과

- 행안부, 지자체, 독립대학 관계자 면담 등 실태조사(' 10.12)
-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10.12)
- 위원회 상정 : 분과위(' 11.1.17), 전원위(' 11.1.24)

Ⅱ. 현 황

□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국가 및 지방으로 구분하여 장학규정을 제정하였지만 국가직은 실효성 미비로 운영을 중단하고 지방직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구분	법령	관련 규정	시행
국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79)	'03년까지 시행
	경찰공무원법		'91년까지 시행
지방 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지방직)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80)	시행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79)	시행 중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운영 현황(국가직·경찰직 운영 중단)

-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근거로 자체 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많지만 실제 운영은 미미
- 조례 및 규칙으로 장학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100개이나 시행하는 지자체는 27개 (총 230개 지자체의 12% 수준)

구 분		운영기관(100개)	특별임용(311명)
강 원	1	화천	- * 화천군은 2010년부터 운영
충 북	4	충북도, 옥천, 영동, 보은	2005년 ~ : 33명 (충북도 21명, 시·군 12명)
충 남	11	충남도,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1999년 ~ : 248명 (충남도 170명, 시·군 78명)
전 남	2	나주, 함평	2008년 ~ : 5명 특채 나주(5), 함평(-)

경 북	6	경북도, 예천, 울릉, 영양, 영덕, 청송	2007년 ~ : 21명 특채 (경북도 14명, 시·군 7명)
경 남	3	남해, 하동, 거창	2009년 ~ : 4명 특채 남해(1), 하동(1), 거창(2)

※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운영 중단

□ 지방 도립대학 현황

○ 설립 배경

- 지역 인재 개발,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낮은 등록금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3년제)

○ 설립 현황

지 역	대 학명	소재지	개 교	주요 학과
강 원	강원도립대학	강릉	'98	자동차과,정보통신과,건설토목과, 지적부동산과,해양생명과학과 등
충 북	충북도립대학	옥천	'98	기계자동차과,전기에너지시스템과, 환경생명과학과,사회복지과 등
충 남	충남도립대학	청양	'98	자치행정과,토목정보과,소방안전관리, 전기전자과,작업치료과 등
전 남	전남도립대학	담양	'98	조선기계과,자동차과,건축인테리어과, 호텔조리영양과,유아교육과 등
경 북	경북도립대학	예천	'98	지방행정과,응급구조과,유아교육과, 토목과,피부미용과,자동차전공 등
경 남	도립남해대학	남해	'98	관광과,조선토목,전기과,호텔조리 등
	도립거창대학	거창	'98	해양전기과,조선과,간호과,토목과 등

※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미설치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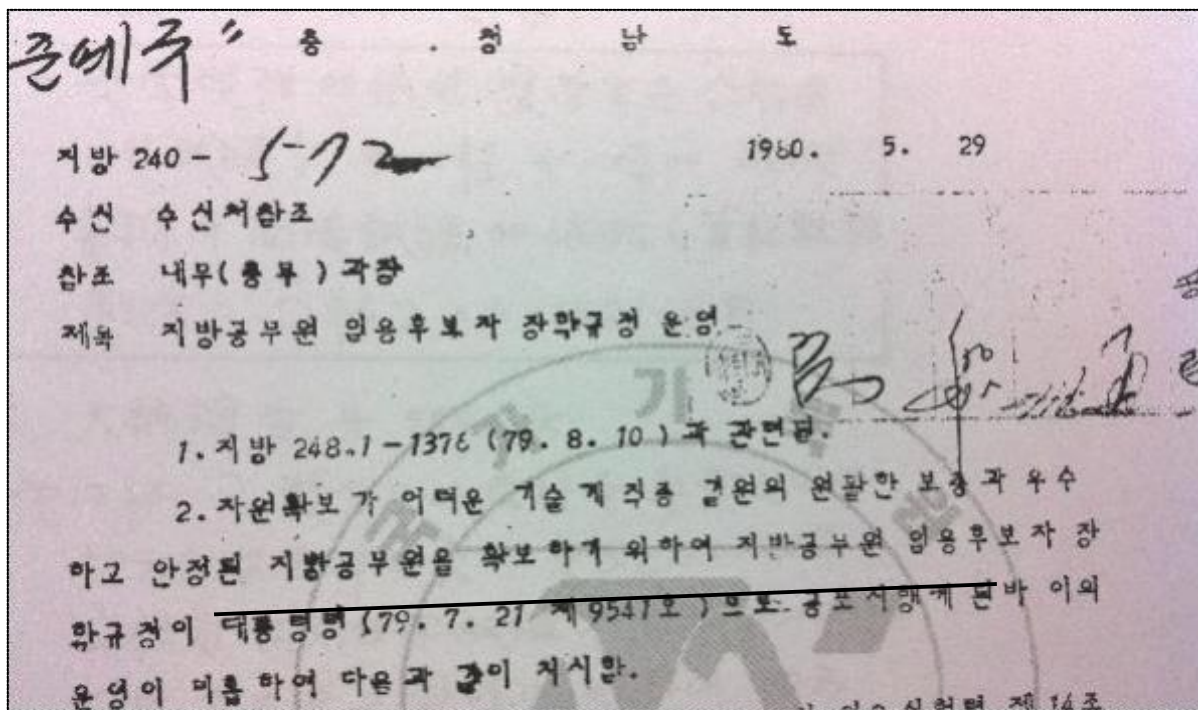
1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장학규정 제정

○ 입법 당시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도입

- 충남도의 경우, 관내 시·군에 ‘자원 확보가 어려운 기술계 직종 결원의 원활한 보충 등’이라는 내용으로 지시(지방240-572, '80.5.29)

※ 아울러, 농업고등학교 육성방안으로 농고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도 동 장학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추가 지시



- 전남도 고흥군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문을 전국 각급 대학(국·사립)에 시달(고흥내무248-2116, '80.6.27)
 - 지원자격은 고흥군 출신, 전공학과는 약학과로 제한 (국가기록원)

□ 국가직은 운영을 중단하고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만 시행

○ 국가직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04년 이후 중단하였고, 지방직만 일부 기관에서 시행

- 장학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100개이나 시행하는 곳은 27개에 불과

시·도	시행	시·도	시행	시·도	시행	시·도	시행
서울시	-	대전시	- / 4	강원도	1 / 6	경남도	3 / 4
부산시	- / 13	울산시	- / 1	충북도	4 / 4	전북도	- / 3
인천시	- / 6	광주시	- / 5	충남도	11 / 15	전남도	2 / 13
대구시	- / 7	경기도	- / 9	경북도	6 / 10	제주도	-

※ 기초자치단체 230개에서 12% 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특히, 독립대학이 설치된 지자체의 일부 시·군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독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장학규정을 운영

구 분	운영기관	구 분	운영기관
강원도립대학 (강릉)	-	전남도립대학 (담양)	나주
충북도립대학 (옥천)	충북도, 옥천, 영동, 보은(4)	경북도립대학 (예천)	경북도, 예천, 울릉, 영양, 영덕, 청송(6)
충남도립대학 (청양)	충남도,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11)	경남도립대학 (남해, 거창)	남해, 하동, 거창(3)

□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 가능

○ 법령 제정 당시 기술 직종과 지역 출신의 우수공무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와 다름

- 공무원 직업 선호도는 매년 1위를 할 정도로 인기 직종으로 부각

※ ('09) 공무원(20.1%), 사무직(17.6%), 기술직(10.8%), 금융직(8.9%), 교육직(7.5%)

○ 현행 지자체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직종에 상관없이 높은 경쟁률과 합격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우수한 인재의 선발이 가능

※ 2010년도 충남도 공개경쟁임용시험('10.5.22) 평균 경쟁률 : 17대 1

2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편법 운영

□ 장학생 선발 자격을 특정대학으로 제한

- 선발 자격을 지방도립대학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반함
 - 장학규정은 제정 초기와 달리 지방도립대학 육성 수단으로 활용
 - ※ 충남·충북·경북(시·군 포함) : 지방도립대학으로 제한
- 일부 지자체는 행정직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을 관련 학과가 아닌 기술학과에서 선발
 - 행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행정법 과목을 응시도 않은 학생을 행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
 - ※ 전국 7개의 도립대학은 기술관련 2~3년제 전문대학으로 설립
(단, 충청도 및 경북도만 자치행정, 지방행정 등 행정관련 학과를 설치)

- 충청도는 '09년 행정9급 임용후보자 5명을 선발하면서 호텔관광외식과, 인테리어광고디자인과 등 행정관련 학과가 아닌 2명을 선발
- 충북 옥천군은 '06~'07년에 걸쳐 행정9급 임용후보자 7명을 선발했지만 행정 전공이 아닌 기술학과 전공자를 선발
('06) 행정4 : 식품생명과학1, 환경생명과학1, 인터넷경영1, 기계자동차1
('07) 행정3 : 컴퓨터공학1, 환경생명과학1, 인터넷경영정보1

□ 학과별 강제 할당으로 자격미달의 장학생 선발

- 충청도는 매년 도립청양대학을 대상으로 학과성적과 도에서 실시하는 선발고사를 합하여 장학생을 선발
 - 그러나, 임용예정 직렬이 동일계열 학과이면 통합하여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별로 분리하여 선발

- 충남도는 '09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에서 행정직(9급) 5명을 자치행정과 2명, 경찰행정과 1명, 인테리어광고디자인과 1명, 호텔관광외식과 1명 등 학과별로 분리하여 선발

○ 이로 인해 선발고사 성적이 타 학과 학생보다 부진하더라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문제점 발생

- 일부 합격자는 공채시험 기준인 과락(40점 미만)이 있음에도 학과별 강제 할당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함

※ 충남도 장학생 선발고사(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충남 '09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고사 결과(행정)

순위	자치행정과		경찰행정과		호텔관광외식		인테리어광고	
1	1	81(합격)						
2	2	81(합격)						
3	3	79						
...		...		...		...		...
11	11	51						
12	12	51	1	49(합격)				
13	13	46	2	49	1	48(합격)		
14	14	46	3	41	2	37		
15	15	39	4	36	3	33	1	35(합격)

☞ 충남도는 '10년부터는 과목점수 40점 이하는 과락으로 합격자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시험 합격자에 비하면 점수 격차가 큼

* '10년도 공개채용시험 합격자(최저 79점) vs 장학생 합격자(최저 50점)

□ 졸업을 앞둔 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 장학규정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는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 장학생 선발과 특별임용까지의 기간이 불과 석 달 남짓으로 일반적인 특별임용과 별 차이가 없음

※ 졸업반 장학생 선발 지자체 : 충북, 충남, 경북(이상 광역), 충북 옥천, 충남 보령·금산, 경북 예천(이상 기초) 등

▪ 충북도 '10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일정

- 임용직급 : 지방소방사
- 응시자격 : '11.2월 졸업예정자로 '10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3.6이상인 자
- 선발일정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면 접 (실기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10.11.29~12.3	12.10일한	12.16일한	12.17일한

○ 해당 지자체는 장학생을 미리 선발되면 그 이후로는 학업에 소홀히 하므로 졸업을 앞두고 선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

-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졸업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규정은 동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남

☞ 기술계 지방도립대학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 필요하다면 동 장학규정보다는 기술직렬 특별임용 제도가 타당함

- 동 제도는 특정대학 출신이 아닌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하여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8호

-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의 학과 졸업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3 지자체의 자의적 운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제기

□ 장학규정에 구체적인 선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자의적인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점 발생

○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면접시험 실시

- 충북 옥천군은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기획실장, 인사과장)으로만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5명을 선발했는데 학점이 더 높은 학생이 면접에서 탈락

○ 장학생 선발기준을 예고도 없이 변경

- 충남 보령시는 예고도 없이 장학생 선발기준을 학과성적에서 선발고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준으로는 합격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경찰 수사 중('10.11월)

○ 선발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성적 하위자도 선발이 가능

- 경북에서는 경북도립대학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영양군은 입학성적이 상위 50%, 청송군은 상위 30%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

□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

○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선거를 도와준 자거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학생을 특채한다는 의혹들이 제기

- 공무원 7명 부정 특별임용 혐의로 전 예천군수 불구속 기소('10.12.2)
전 예천군수는 12년간 재직하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지역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청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학생을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06년부터 3년간 7명의 9급 공무원을 특별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충남도립 청양대학 학생에 대한 특채 특혜 의혹 제기('10.11.23)
지역시민단체는 충남도와 관내 시군이 청양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특별임용하는 과정에서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무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IV. 개선방안

□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및 특별임용 규정 폐지

-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장학생 선발 및 특별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
 - 현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동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짐

※ 장학생 선발 제도를 신뢰하고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 개정 규정은 개정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한 이후부터 시행토록 조치

< 개선 방안 >

□ 장학금 지급 규정 폐지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삭제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지급) 삭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폐지

□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 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임용) ②항 11호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 삭 제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항 11호 삭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항 10호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10.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①항 9호 삭제

○ 그 외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규정 삭제

- 경찰공무원법 제8조 ③항 5호, 소방공무원법 제6조 ②항 5호 등

V.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1. .
- 대상기관 : 행안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 정 개선	○ 장학금 지급 규정 폐지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삭제 ·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지급) 삭제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폐지	행안부	권고후 6개월 이내
	○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 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임용) ②항 11호 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항 11호 삭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항 10호 삭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①항 9호 삭제	행안부	권고후 6개월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규정 삭제 · 경찰공무원법 제8조 ③항 5호, 소방공무원법 제6조 ②항 5호 등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권고후 6개월 이내

정선군 공고 제2023-1045호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2023년 8월 31일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사업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 교부 불가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닐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이 원칙
- 주된 사업 실비위주로 지원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 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주된 사업) 이외의 사업 지원 불가
(예 : 00환경보호단체에서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 경우 등)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권고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31.(목) ~ 2023. 9. 15.(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23. 9. 15.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정선군 지방보조금 사업분야별 소관부서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첨부서식 작성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 있을 시 사전 예치 필수)
 -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사본(전용카드 미사용 시 향후 사업신청 패널티 적용)

5.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사업 선정 ⇨ 예산편성 ⇨ 의회 의결 ⇨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선정단체 개별통지

7. 보조금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보탬e 시스템 가입 및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 각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 지방보조금 시스템(보탬e)를 통해 관리>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 통장·카드 발급(보탬e 협약 카드, 통장) 필요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보조금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보탬e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같은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교부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하며, 평가결과는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에 반영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 집행을 환수처리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해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은 물론,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 및 징수 함
- 본 공고문 외에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사업 주관부서(정선군 대표 전화 1544-9053) 또는 기획관실(033-560-2239)로 문의 바람

정선군 공고 제2023-1067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자연생태과-2179(2022.12.30.)야생동물 분야 시군조례 일원화 추진 공문
-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시·군별 상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지원기준 일원화 필요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 단가 변경
(고라니 마리당 4만원 → 5만원, 멧돼지 마리당 5만원 → 7만원)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45),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예술회관 2층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 포상금을 신청한 이는, 개정 전 규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지원)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 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고라니 1마리당 <u>4만원</u>	1. 고라니 1마리당 <u>5만원</u>
2. 멧돼지 1마리당 <u>5만원</u>	2. 멧돼지 1마리당 <u>7만원</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3-1070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경비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 수정, 삭제 등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 및 정산(안 제4조 ~ 제6조)
- 라. 지원중단 및 지도·감독(안 제7조 ~ 제8조)
- 마. 포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5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hi995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 대원 간식(야식)비

5. 상해보험가입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의 그 사용 및 활동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법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법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 지출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